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 농축산청 간의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 농축산청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전자위생증 상호 협력을 희망하며, 이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항 목적

양 기관은 대한민국과 칠레 간 수출입 되는 축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 정보 교환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다. 초기 시범사업은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식육 제품을 포함한다.

제2항 협력 분야

1. 양 기관은 현지조사, 상호시스템 연계, 시험운영, 정보 보안 등 전자위생증 정보 교환을 위해 양국 간 전문가들의 기술 협력을 증진한다.
2. 양 기관은 양국 간 시범운영을 통해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(paperless) 전자위생증 시스템을 구축한다.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시기와 기간은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한다.

3. 양 기관은 전자위생증을 적용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노력한다.
4. 양 기관은 양국 간 축산물 교역에서 전자위생증의 활성화를 촉진한다.
5. 양 기관은 정보 보안을 위한 접속 인증, 전자 증명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의 기술 혁신을 포함하여 전자위생증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6. 양 기관은 관련 다자간 및 국제 포럼에서 전자증명서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모색한다.

제3항 일반 조항

1. 동 양해각서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양 기관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사항을 발생하지 아니한다.
2. 동 양해각서는 양국의 법규 하에서 시행되며 양 기관의 예산과 인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3. 양 기관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동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제4항 이견의 해결

동 양해각서의 해석, 적용, 이행에 관한 어떠한 이견도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제5항 접촉 창구

양 기관은 이로써 동 MOU에 따른 행정절차, 정보교환 등 기타 사안의 논의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 창구를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.

1. 대한민국 측 :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
수입검사관리과
2. 칠레 측 : 농축산청 국제전자무역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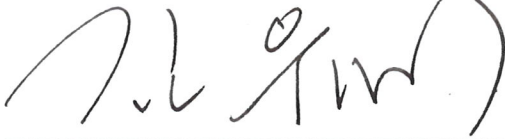
제6항 효력, 개정 및 종료

1. 동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양 기관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.
2. 어느 한 측은 다른 한 측에 동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 양해각서는 통보를 하고 3개월 후부터 효력이 정지된다.

이 양해각서는 2021년 8월 31일 한국어, 스페인어 및 영어로
각 2부씩 서명되었으며, 모두 동일하게 유효하다. 만일 해석
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영어본을 우선한다.

대한민국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



칠레

농축산청장

